

圖書館法과 圖書館振興法條文對比表

現 行	制 定
<p>● 圖書館法 第1章 總 則</p> <p>第1條 (目的) 이 法은 圖書館의 設置·운영과 奉仕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社會 各 분야에 대한 知識·情報의 제공 및 流通의 효율화와 國民의 平生教育 및 文化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.</p> <p>第2條 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圖書館”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情報利用·調査·研究·學習·敎養 등 平生教育 및 文化發展에 기여하는 施設을 말한다. 2. “圖書館資料(이하 “資料”라 한다)”라 함은 圖書館이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하는 圖書·記錄·小冊子·連續刊行物·樂譜·地圖·사진·그림 등 各種 印刷資料, 映畫필름·슬라이드·音盤·마이크로形態物·테이프 등 視聽覺資料, 電算化資料, 公文書 등 行政資料, 鄉土資料 기타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. 3. “公共圖書館”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·敎養·調査·研究 및 教育·文化活動을 增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 4. “大學圖書館”이라 함은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(教育大學·師範大學·放送通信大學·開放大學·專門大學 및 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서 敎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 	<p>● 圖書館振興法 제1장 총 칙</p> <p>第1條 (目的) 이 法은 圖書館의 設置·운영과 奉仕에 필요한 사항을 規定하여 圖書館의 건전한 육성과 각종 文化·教育施設과의 相互協力 增進을 도모함으로써 社會 各 분야에 대한 知識·情報의 제공 및 流通의 효율화와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.</p> <p>第2條 (定義)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“圖書館”이라 함은 圖書館資料를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하여 公衆 또는 特定人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情報利用·調査·研究·學習·敎養 등 文化發展 및 平生教育에 이바지하는 施設을 말한다. 2. “圖書館資料”라 함은 圖書館이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하는 圖書·記錄·小冊子·連續刊行物·樂譜·地圖·사진·그림 등 各種 印刷資料, 映畫필름·슬라이드·音盤·비디오物·마이크로形態物·테이프 등 視聽覺資料, 電算化資料, 公文書 등 行政資料, 鄉土資料 기타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資料를 말한다. 3. “公共圖書館”이라 함은 公衆의 情報利用·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을 增進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 4. 현행과 같음

現 行	制 定
<p>5. “學校圖書館”이라 함은 高等學校이하의 各級學校 (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)에서 敎員과 學生의 敎授·學習活動을 지원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 또는 圖書室을 말한다.</p>	<p>5. 현행과 같음</p>
<p>6. “專門圖書館”이라 함은 그 設立機關·團體의 所屬員 또는 公衆에게 特定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</p>	<p>6. 현행과 같음</p>
<p>7. “特殊圖書館”이라 함은 <u>그 設立機關·團體의 所屬員이나 身體障礙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學習·敎養·調査 및 研究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</u></p>	<p>7. “特殊圖書館”이라 함은 <u>障礙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學習·敎養·調査·研究 및 文化活動 등을 위한 圖書館奉仕를 제공함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圖書館을 말한다.</u></p>
<p>第3條 (圖書館의 종류) 圖書館은 그 設立者에 따라 國立圖書館·公立圖書館·私立圖書館으로 구분하고, 그 設立目的에 따라 國立中央圖書館·公共圖書館·大學圖書館·學校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으로 구분한다.</p>	<p>제3조 (圖書館의 종류) 현행과 같음</p>
<p>第4條 (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한 適用排除) <u>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(삭 제)</p>
<p>第5條 (大學圖書館등의 이용제공) ①大學圖書館·學校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그 設立目的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公衆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. ②大學圖書館·學校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 <u>社會敎育</u>을 실시할 수 있다.</p>	<p>第4條 (大學圖書館의 이용 제공) ① 현행과 같음 ② 大學圖書館·學校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당해 圖書館의 特性에 맞는 <u>平生敎育</u>을 실시할 수 있다.</p>
<p>第6條 (圖書館의 施設·資料) ①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. ②圖書館종류별 施設 및 資料의 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	<p>第5條 (圖書館의 施設·資料) ①圖書館은 <u>圖書館資料</u>(이하 “資料”라 한다)의 보존·整理와 <u>利用者의 편의</u>를 위하여 圖書館業務에 적합한 施設 및 資料를 갖추어야 한다. ② 현행과 같음.</p>

現 行	制 定
<p>第7條 (司書職員등) ①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運營에 필요한 司書職員·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(司書)를 두어야 하며, 社會教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社會教育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司書職員은 1級正司書·2級正司書 및 准司書로 구분하며 그 資格要件과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>(신 설)</p> <p>(신 설)</p>	<p>第6條 (司書職員등) ①圖書館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圖書館 운영에 필요한 司書職員·司書教師 또는 實技教師(司書)를 두어야 하며, 社會教育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社會教育 專門要員을 둘 수 있다.</p> <p>② 現행과 같음.</p> <p>③國家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書職員 등의 研修 기타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.</p> <p>第7條 (文化施設과의 協力) 圖書館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文化院·博物館·美術館 등 각종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.</p>
<p>第8條 (資料의 交換·移管·폐기 및 除籍) ①각종 圖書館은 資料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資料를 相互 交換 및 移管할 수 있고 利用價値가 喪失 또는 汚損된 資料를 폐기 혹은 除籍할 수 있다.</p> <p>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交換·移管·폐기 및 除籍의 基準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>第9條 (圖書館發展委員會) ①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重要施策의 수립등에 관하여 文敎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文敎部長官소속하에 圖書館發展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를 設置한다.</p> <p>(신 설)</p>	<p>第8條 (資料의 交換·移管·폐기 및 除籍) ①圖書館은 資料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資料를 相互 交換 및 移管할 수 있고 利用價値가 없게 되거나 汚損된 資料를 폐기 또는 除籍할 수 있다.</p> <p>② 現행과 같음</p> <p>第9條 (圖書館發展委員會) ①圖書館의 균형있는 발전과 圖書館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의 重要 사항에 관한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文化部長官 소속하에 圖書館發展委員會(이하 “委員會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圖書館發展基本政策 2. 圖書館協力網의 구성 및 운영 3. 圖書館振興基金의 管理·運用 4. 기타 圖書館振興政策에 관하여 文化部長官이 附議하는 사항
<p>②委員會의 구성 및 職務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>第10條 (圖書館振興基金) ①政府는 圖書館의 設立·施設 운영 기타 圖書館振興에 소요되는 資金에 充당하기 위하여 圖書館振興基金(이하 “基金”이라 한다)</p>	<p>②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>第10條 (圖書館振興基金) ①政府는 圖書館의 設立, 施設 및 資料의 확충, 司書職員의 資質向上, 研究 기타 圖書館 발전에 필요한 資金에 充당하기 위하여</p>

現 行	制 定
<p>을 設置할 수 있다.</p> <p>②基金은 다음 각호의 財源으로 造成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政府出捐金 2. 法人·團體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寄附金 3. 基金의 운영에서 생기는 收益金 <p>第11條 (基金의 運用·管理) ①基金은 <u>文敎部長官이 運用·管理한다.</u></p> <p>②基金의 造成 및 運用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은 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基金造成計劃 2. 基金運用計劃 3. 기타 基金運用上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<p>③文敎部長官은 基金의 運用·管理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<u>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·直轄市·道の 敎育委員會에 委任할 수 있다.</u></p> <p>④基金의 運用·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u></p> <p>第12條 (租稅減免) ①法人·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의 設立·施設·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<u>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政府는 第1項에 의하여 圖書館에 寄附한 金錢 기타 財産에 관하여는 <u>租稅減免規制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의 特例를 適用한다.</u></p> <p>第13條 (類似名稱 使用禁止)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<u>圖書館이라는 名稱을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 <p>第14條 (圖書館協會) ①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 상호간의 <u>情報資料交換 및 業務協助, 圖書館의 운영·管理에 관한 研究, 國際圖書館團體와의 相互協力, 기타 圖書館職員의 資質向上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圖書館協會(이하 “協會”라 한다)를 設立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.</p> <p>③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</p>	<p>圖書館振興基金(이하 “基金”이라 한다)을 設置할 수 있다.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第11條 (基金의 管理·運用) ①基金은 <u>文化部長官이 管理·運用한다.</u>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(삭 제)</p> <p>③基金의 管理·運用に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u></p> <p>第12條 (金錢 등의 寄附) 法人·團體 및 개인은 圖書館의 設立·施設·資料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<u>圖書館 및 基金에 金錢 기타 財産을 寄附할 수 있다.</u></p> <p>(삭 제)</p> <p>第13條 (類似名稱의 사용금지) 이 法에 의한 圖書館이 아니면 <u>圖書館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.</u></p> <p>第14條 (圖書館協會) ①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 상호간의 <u>資料交換 및 業務協助, 圖書館의 운영·管理에 관한 研究, 國際圖書館團體와의 相互協力 기타 圖書館職員의 資質向上 및 共同利益增進을 위하여 文化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圖書館協會(이하 “協會”라 한다)를 設立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-③ 현행과 같음</p>

現 行	制 定
<p>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.</p> <p>④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補助할 수 있다.</p> <p>第2章 國立中央圖書館</p> <p>第15條 (國立中央圖書館) ①<u>教育部長官</u>소속하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.</p> <p>②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分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分館을 둘 수 있다.</p> <p>第16條 (業務) ① 國立中央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國內外資料의 蒐集·整理·分析· 보존· 蓄積 및 公衆에의 이용 (<u>신 설</u>) 2. 다른 圖書館과의 <u>情報資料의 流通</u> 3. 각종 書誌의 작성 및 標準化와 國際標準資料番號 制度의 운영 4.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情報 協力網의 統轄 5. 外國圖書館과의 協力 및 資料의 國際交流 6. 다른 圖書館에 대한 業務 및 <u>社會教育活動의 指導·지원</u> (<u>신 설</u>) 7. 圖書館운영에 관한 調査·研究 8. <u>司書職員의 研修</u> 9. 기타 國立中央圖書館으로서의 機能 遂行에 필요한 業務 <p>②國立中央圖書館은 第1項 各號의 業務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第20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할 수 있다.</p> <p>③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<u>相互協力</u>한다.</p> <p>第17條 (資料의 제공 및 納本)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가 <u>圖書·連續刊行物</u>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</p>	<p>④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.</p> <p>第2章 國立中央圖書館</p> <p>第15條 (國立中央圖書館) ①<u>文化部長官</u> 소속하에 國立中央圖書館을 둔다.</p> <p>② 현행과 같음</p> <p>第16條 (業務) ① 國立中央圖書館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현행과 같음 2. 國內資料의 納本管理 3. 다른 圖書館과의 <u>資料의 流通</u> 4. 현행과 같음 5. 電算化를 통한 國家文獻情報體制 및 圖書館協力 網의 統轄 6. 현행과 같음 7. 다른 圖書館에 대한 業務·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의 指導·지원 8. <u>讀書의 生活化</u>를 위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9. 현행과 같음 10. 圖書館 職員에 대한 研修 11. 기타 國家代表圖書館으로서의 機能 수행에 필요한 業務 <p>(삭 제)</p> <p>②國立中央圖書館은 그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國會圖書館과 <u>協力</u>하여야 한다.</p> <p>第17條 (資料의 제공 및 納本)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 團體가 <u>圖書·連續刊行物·音盤·비디오物</u>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</p>

現 行	制 定
<p>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者가 圖書·連續刊行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.</p> <p>③國立中央圖書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本을 한 者에게 그 資料에 대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.</p> <p>④國立中央圖書館長은 納本の 實效를 거두기 위하여 關係部處의 長에게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.</p> <p>⑤納本の 節次·補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	<p>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.</p> <p>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國立中央圖書館에 納本하여야 한다. <u>改訂版을 발행하거나 製作한 때에도 또한 같다.</u></p> <p>③國立中央圖書館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本을 한 者에게 <u>지체없이 納本畢證을 교부하여야 하고 그 資料에 대한 正當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④~⑤ 현행과 같음.</p>
<p>第18條 (國際標準資料番號) ①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을 발행하고자 하는 者는 그 圖書 또는 連續刊行物에 대하여 國立中央圖書館으로부터 國際標準資料番號(이하 “資料番號”라 한다)를 부여받아야 한다.</p> <p>(신 설)</p>	<p>第18條 (國際標準資料番號) ① 현행과 같음.</p>
<p>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番號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	<p><u>②國立中央圖書館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出版 등 관련 專門機關·團體 등과 協力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③ 현행과 같음.</p>
<p>第3章 公共圖書館</p>	<p>第3章 公共圖書館</p>
<p>第19條 (設立) 國家·地方自治團體·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은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.</p>	<p>第19條 (設立) 國家, 地方自治團體, 民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(이하 “法人”이라 한다), 團體 또는 개인은 公共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.</p>
<p>第20條 (業務) 公共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資料의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 및 公衆에 의 이용 公衆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 <p>(신 설)</p>	<p>第20條 (業務) 公共圖書館은 情報 및 文化·教育센터로서의 機能을 發揮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<u>地方行政 및 産業分野에 필요한 情報의 제공</u>

現 行	制 定
<p>(신 설)</p> <p>3. 講演會·鑑賞會·展示會·讀書會 기타 社會教育 및 文化活動의 主催 또는 獎勵</p> <p>4. 다른 圖書館과의 資料交流</p> <p>5. 圖書館業務에 관한 調査·研究</p> <p>6. 기타 公共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</p> <p>第21條 (公共圖書館의 設置·육성등)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教育과 文化發展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置·育成하여야 한다.</p> <p>②公共圖書館에는 어린이·老人·身體障者들을 위한 圖書館奉仕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③公共圖書館은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 또는 移動圖書館을 둘 수 있다.</p> <p>第22條 (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) ①地方自治團體가 設立·운영하는 公共圖書館(이하 “公立公共圖書館”이라 한다)의 운영비는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이를 부담한다.</p> <p>②國家는 公共圖書館을 設立한 脂肪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施設·資料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.</p> <p>(신 설)</p> <p>第23條 (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 및 運營委員會) ①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 또는 行政職으로 補한다.</p>	<p>4. 讀書의 生活化를 위한 計劃의 수립 및 실시</p> <p>5. 講演會·鑑賞會·展示會·讀書會 기타 文化活動 및 平生教育의 主催 또는 獎勵</p> <p>6. 다른 圖書館과의 긴밀한 協力과 資料의 交換 또는 相互貸借의 실시</p> <p>7. 現행과 같음</p> <p>8. 現행과 같음</p> <p>第21條 (公共圖書館의 設立·육성 등)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地域社會의 情報提供 및 文化發展과 平生教育을 위하여 公共圖書館을 設立·육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公共圖書館은 어린이·老人·障者들을 위한 圖書館奉仕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.</p> <p>③公共圖書館은 모든 地域住民에 대한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地域의 特性에 따라 分館·移動圖書館 또는 貸出文庫를 設置하여야 한다.</p> <p>第22條 (公立公共圖書館의 운영) ①地方自治團體가 設立·운영하는 公共圖書館(이하 “公立公共圖書館”이라 한다)의 運營費는 그 設立·운영하는 機關의 會計에서 이를 부담한다. 다만, 教育法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教育長이 設立·운영하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一般會計에서 그 運營費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.</p> <p>②國家는 公立公共圖書館을 設立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圖書館의 設立·資料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.</p> <p>第23條 (公立公共圖書館의 지원) ①文化部長官은 公立公共圖書館의 균형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文化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第24條 (國·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 및 運營委員會)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·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司書職으로 補한다.</p>

現 行	制 定
<p>②<u>公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는 圖書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.</u></p> <p>③<u>圖書館運營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u></p> <p>第24條 (法人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) <u>民法의 規定에 의한 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·郡教育長(서울特別市·直轄市의 教育區廳長을 포함한다, 이하 같다)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</u></p>	<p>②<u>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公共圖書館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文化施設과의 긴밀한 協助를 위하여 당해 圖書館에 圖書館運營委員會를 둔다.</u></p> <p>③ <u>현행과 같음</u></p> <p>第25條 (法人 등이 設立한 公共圖書館의 登錄등) ① <u>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이 公共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·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基準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</u></p>
<p>(신 설)</p> <p>第25條 (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·監督등) ①<u>市·郡教育長은 第24條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(이하 “私立公共圖書館”이라 한다)에 대하여 균형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<u>市·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·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 <p>第26條 (是正命令) <u>市·郡教育長은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그 施設 및 운영에 관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</u></p>	<p>②<u>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·資料 및 司書職員 등에 관한 基準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文化部長官은 期間을 정하여 是正을 命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<u>文化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. 다만, 당해 處分의 相對方 또는 그 代理人이 正當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의견을 陳述할 機會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第26條 (私立公共圖書館의 指導·지원) ①<u>文化部長官은 第25條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公共圖書館(이하 “私立公共圖書館”이라 한다)의 균형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·지원을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<u>文化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私立公共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
	<p>(삭 제)</p>

現 行	制 定
<p><u>立目的에 위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그 是正을 命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第27條 (業務의 정지) 市·郡教育長은 私立公共圖書館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設立者에 대하여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業務의 정지를 命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第6條에 規定된 施設基準을 유지하지 못한 때 2.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을 받고도 正當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</p> <p><u>第28條 (私立公共圖書館의 廢館申告) ①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·郡教育長에게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.</u> <u>②市·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그 圖書館에 관한 登錄을 抹消한다.</u></p> <p><u>第29條 (私立公共圖書館의 補助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私立公共圖書館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補助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第30條 (使用料·入館料) 公共圖書館은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公立公共圖書館의 入館料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 <p><u>第31條 (資料의 제공) 地方自治團體가 圖書·連續刊行物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管轄地域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 <p>第 4 章 大學圖書館</p> <p><u>第32條 (設置) 教育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學教育課程이상의 教育機關에는 大學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第33條 (業務)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.</u></p> <p>1. 教授와 學生의 研究 및 教育活動에 필요한 資料</p>	<p>(삭 제)</p> <p><u>第27條 (私立公共圖書館의 廢館申告) 私立公共圖書館의 設立者가 당해 圖書館을 廢館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廢館申告를 하여야 한다.</u> (삭 제)</p> <p><u>第28條 (私立公共圖書館의 補助) ①현행과 같음.</u></p> <p><u>第29條 (使用料) 公共圖書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利用者로부터 使用料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公立公共圖書館의 使用料에 관하여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u></p> <p><u>第30條 (資料의 제공) 地方自治團體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발행 또는 製作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製作日로부터 30日이내에 그 資料 2部를 管轄地域안에 있는 公共圖書館에 제공하여야 한다.</u></p> <p>第 4 章 大學圖書館</p> <p><u>第31條 (設置) 현행과 같음.</u></p> <p><u>第32條 (業務) 大學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</u> 1-3. 현행과 같음.</p>

現 行	制 定
<p>의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 및 그 이용</p> <p>2. 효율적 教育課程의 수행을 위한 지원</p> <p>3. 圖書館利用의 體係의 指導</p> <p>4.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情報網을 통한 情報資料의 流通</p> <p>5. 기타 大學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</p> <p><u>第34條 (指導·監督)</u> 大學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당해 大學 또는 教育機關의 監督廳의 指導·監督을 받는다.</p> <p>第 5 章 學校圖書館</p> <p><u>第35條 (設置)</u> 國民學校·中學校·高等學校(이에 準하는 各種學校를 포함한다)에는 學校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한다.</p> <p><u>第36條 (業務)</u>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遂行한다.</p> <p>1. 學校教育에 필요한 資料의 蒐集·整理·分析·보존·蓄積 및 그 이용</p> <p>2. 讀書指導 및 圖書館利用의 指導</p> <p>3. 視聽覺資料의 開發·製作 및 이용</p> <p>4. 기타 學校圖書館으로서의 機能遂行에 필요한 業務</p> <p><u>第37條 (指導·監督)</u> 學校圖書館은 教育法과 私立學校法の 規定에 의한 당해 學校의 監督廳의 指導·監督을 받는다.</p> <p>第 6 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</p> <p><u>第38條 (設立등)</u> ①國家·地方自治團體·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은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할 수 있다.</p> <p>②國家는 特定분야별로 專門的인 圖書館을 設立·운영할 수 있으며, 特定분야별 資料確保 및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大學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중에서 지정</p>	<p>4. 다른 圖書館과의 協力과 圖書館協力網을 통한 資料의 流通</p> <p>5. 현행과 같음.</p> <p><u>第33條 (指導·監督)</u> 현행과 같음</p> <p>제 5 장 學校圖書館</p> <p><u>第34條 (設置)</u> 현행과 같음.</p> <p><u>第35條 (業務)</u> 學校圖書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.</p> <p>1.-4. 현행과 같음</p> <p><u>第36條 (指導·監督)</u> 현행과 같음.</p> <p>第 6 章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</p> <p><u>第37條 (設立등)</u> ① 현행과 같음</p> <p>(삭 제)</p>

現 行	制 定
<p>하여 專門圖書館의 機能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身體障礙者의 이용을 主된 目的으로 하는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6條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·郡 教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</p> <p>第39條 (指導·監督등) ①市·郡教育長은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均衡있는 圖書館發展과 圖書館奉仕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指導와 監督을 할 수 있다.</p> <p>②市·郡教育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導·監督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 <p>③文教部長官은 專門圖書館과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圖書館政策의 수립에 필요한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</p>	<p>②法人·團體 또는 개인이 公衆이나 障礙人의 이용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을 設立하고자 할 때에는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·資料 및 司書職員에 관한 基準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.</p> <p>(삭 제)</p>
<p>第40條 (準用) 第7條第1項의 規定은 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에 대하여, 第26條 내지 第29條의 規定은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.</p>	<p>第38條 (準用) 第25條 第2項·第3項 및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은 第37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專門圖書館 또는 特殊圖書館에 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.</p>
<p>第7章 圖書館情報協力網</p>	<p>第7章 圖書館協力網</p>
<p>第41條 (圖書館情報協力網 구성) ①政府는 情報資料의 流通·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효율을 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力を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各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圖書館情報協力網(이하 “協力網”이라 한다)을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電算化情報시스템을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2. 書誌編纂·情報處理·奉仕活動 및 施設등의 標準化 3. 分擔收書·相互貸借·綜合目錄·印刷카드制度등 圖書館運營의 효율화 4. 기타 圖書館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 	<p>第39條 (圖書館協力網의 구성) ①文化部長官은 資料의 流通·管理 및 이용 등에 관한 圖書館業務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圖書館의 相互協력을 도모하기 위한 連繫體制로서 다음 各號의 機能을 수행하는 圖書館協力網(이하 “協力網”이라 한다)을 구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電算化情報體系를 통한 情報 및 資料의 流通 2. 現행과 같음. 3. 現행과 같음. 4. 기타 다른 圖書館과의 相互協力에 관한 사항

現 行	制 定
<p>②協力網은 각종 圖書館으로 구성하고 協力網의 효율적 운영과 統轄을 위하여 中央館과 地域代表館을 두되, 中央館은 國立中央圖書館이 된다.</p> <p>第42條 (中央館의 業務) 協力網의 中央館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協力網의 各級 地域代表館의 지정 또는 變更 2. 協力網의 機能遂行에 관한 企劃·調整 및 指導 3. 協力網 운영의 統轄 <p>第43條 (地域代表館) ①地域代表館은 서울特別市·直轄市 및 道에 두되, 公共圖書館중에서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.</p> <p>②第1項의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 地域協力網의 운영을 統轄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·郡·區(서울特別市·直轄市の 區에 한한다)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</p> <p>第44條 (지원·協力) 協力網 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필요한 施設·體制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각종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과 相互協力하여야 한다.</p> <p>第45條 (協力網의 운영)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>(신 설)</p> <p>第8章 罰 則</p> <p>第46條 (罰金) 第27條(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規定에 의한 命命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.</p>	<p>② 현행과 같음.</p> <p>第40條 (中央館의 業務) 현행과 같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地域代表館의 지정 또는 變更 2. 현행과 같음. 3. 현행과 같음. <p>第41條 (地域代表館) ①地域代表館은 서울特別市·直轄市 및 道에 두되, 中央館이 이를 지정한다.</p> <p>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代表館은 中央館의 指導 및 調整을 받아 傘下地域協力網의 운영을 統轄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市·郡 및 區(自治區에 한한다)에 地方代表館을 둘 수 있다.</p> <p>第42條 (協力 등) 協力網機能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圖書館의 設立者는 당해 圖書館에 필요한 施設·體制 등을 갖추어야 하며, 圖書館은 中央館 및 地域代表館의 指導에 따라 다른 圖書館 및 각종 文化施設과 協力하여야 한다.</p> <p>第43條 (協力網의 운영) 協力網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</p> <p>第8章 補 則</p> <p>第44條 (權限의 委任·委託) 이 法에 의한 文化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.</p> <p>第9章 罰 則</p> <p>(삭 제)</p>

現 行	制 定
<p>第47條 (過怠料) ①第24條 또는 第3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圖書館을 開設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 <p>②第13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 <p>③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당해 資料定價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 <p>④第3項의 資料가 非賣資料인 경우에는 당해 發行資料原價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 <p>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教部長官·教育委員會 또는 教育長(이하 “<u>管轄廳</u>”이라 한다)이 賦課·徵收한다.</p> <p>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이내에 管轄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⑦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裁判을 한다.</p> <p>⑧第6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 또는 地方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.</p>	<p>第45條 (過怠料) ①第25條 第1項 또는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圖書館을 開設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 <p>② 現행과 같음.</p> <p>③第17條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당해 資料定價(그 資料가 非賣資料인 경우에는 당해 刊行資料의 原價)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.</p> <p>(삭 제)</p> <p>第46條 (過怠料의 賦課·徵收節次) ①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文化部長官이 賦課·徵收한다.</p> <p>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の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文化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.</p> <p>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文化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.</p> <p>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の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.</p>
<p>부 칙</p> <p>①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. 다만, 第18條第1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부터 施行한다.</p> <p>(신 설)</p>	<p>付 則</p> <p>第1條 (施行日)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.</p> <p>第2條 (다른 法律의 廢止) 圖書館法은 이를 廢止한다.</p>

現 行	制 定
<p>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전에 설립된 특수도서관은 이 법에 의한 特殊圖書館 또는 專門圖書館으로 본다.</p> <p>(신 설)</p> <p>(신 설)</p> <p>(신 설)</p>	<p>第3條 (圖書館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) 이 법 施行당 시 종전의 圖書館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私立公共圖書館·專門圖書館 및 特殊圖書館은 이 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.</p> <p>第4條 (國·公立公共圖書館의 館長에 관한 經過措置)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立·운영하는 公共圖書館의 館長은 第24條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까지는 司書職 또는 行政職으로 補한다.</p> <p>第5條 (圖書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) 이 법 施行당 시 從前의 圖書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圖書館協會는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.</p> <p>第6條 (다른 法律의 改正 등) ①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. 第28條중 “圖書館法”을 “圖書館振興法”으로 한다. ②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圖書館法을 引用한 경우에는 圖書館振興法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.</p>

한국도서관협회 출판물안내 ☐137-0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2동 산60-1 ☎ (535) 4868·5616				
성 명	저 자	발행연도	면 수	가 격
한국십진분류법 (본표·상관색인)	분류분과위원회편	1980	1,30	20,000원
한국 목록규칙 (3.1 판)	한국도서관협회	1990	101	4,000원 (반양장)
한국도서관통계 (1990 년 도 판)	한국도서관협회	1990	77	4,500원
도서관학·정보학 용 어 사 전	사공 철 등 편	1986	336	15,000원 (반양장)
한국학자료선정목록	한국도서관협회	1986	331	18,000원